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ECD: "BEPS 2.0" and taxation of digitalised economy, in a nutshell \(February 17, 2020\)](#)

### OECD: "BEPS 2.0"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방안

130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는 포괄적 이행 체계(이하 "Inclusive Framework")총회를 열어 2 가지 Pillar 접근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Pillar One"은 물리적 사업장(nexus)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사업에 대해 소비지국에 따른 새로운 과세권(new taxing right) 행사 또는 과세권의 재분배(reallocation of taxing rights)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Pillar Two"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rat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E")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제 협의(BEPS Inclusive Framework)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Pillar One 의 대상 산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산업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적절한 과세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당면한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과세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별 주요 산업 군의 과세소득이 불균형적으로 상실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과세권의 적용되는 Pillar One의 범위

삼성 KPMG 이전가격본부

February 24<sup>th</sup>, 2020

###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포괄적 이행체제 협의는 자동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businesses)과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을 Pillar One solution의 주요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Tel: 02-2112-7939)

### 자동화/표준화 디지털 서비스 사업

- 온라인 검색 엔진
- 소셜 미디어 플랫폼
- 온라인 중개 플랫폼
-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 온라인 게임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 소비자 대상 사업

-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류, 세면도구, 화장품 및 명품, 브랜드 식음료 및 자동차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용 컴퓨팅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레스토랑 및 호텔 산업 프랜차이즈를 라이선스 계약으로 영위하는 사업
- 단순조립(minor assembly) 및 포장 등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3자 재판매업체 또는 중개업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

중간재와 소비재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적용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과제

Pillar One의 적용대상 사업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비재 부품을 판매하는 전방위 사업, 단순조립(minor assembly) 및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단계(intermediary)의 사업, 소비재를 판매하는 후방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Pillar One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포괄적 이행체제 협의는 성명서를 통해 최소 8개의 사업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 디지털 서비스의 정의와...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많은 정도의 인적(Human) 관여 및 판단이 필요한 사업의 구분.

이는 특히 향후 디지털 사업 환경에서는 해외기업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 부가가치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대상 사업을 정의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이슈가 존재합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만 제품마다 소비자 대상 수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자사 브랜드(private label)”로 제조한 제품을 국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사업에서 소비 대상 수준과 무관하게 채취 사업(extractive industries)을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금융 기업의 소득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의 거주 관할 구역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 측면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이행체제 협의는 국제 교통에 운영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Pillar One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쌍방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사업 소득이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이미 과세권이 부여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세이프 하버(Safe Harbor)

Pillar One이 모든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규정으로서 적용될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로 적용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문제가 Pillar One의 주요 이슈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동 이슈의 최종적인 결정은 Pillar One의 구조가 합의된 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Next Steps

OECD에 의하면 Pillar One 솔루션의 주요 특징은 2020년 7월까지 합의될 예정이며, 2020년 말까지 Inclusive Framework와 합의된 상세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Brazil: Possible alignment of transfer pricing rules to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ebruary 4, 2020\)](#)

### 브라질: 향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전면도입 가능성

브라질은 OECD 가입국이 아님에 따라 OECD에서 공표한 이전가격 원칙과 상응하지 않거나 일부만 준용하는 이전가격 규정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과세당국(Receita Federal do Brasil, 이하 “RFB”)과 OECD는 2019년 12월 이전가격 협의 보고서 “Transfer Pricing in Brazil: Towards Convergence with OECD Standards” (이하, “OECD-RFP 보고서”)를 공동 발행하며 향후 OECD 이전가격 원칙과의 융합, 더 나아가 OECD 이전가격 원칙의 완전한 도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보고서 발행 배경 및 개요

브라질은 2010년에 열린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고, 이후 2013년 OECD/G20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OECD의 조세 업무에 활발히 협력해왔습니다.

2018년 2월, RFB와 OECD는 브라질과 OECD 간 이전가격 규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RFB는 2019년 7월 브라질의 최대 경제단체인 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의 주최로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OECD와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그간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의 결과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브라질은 OECD-RFP 보고서를 통해 향후 이전가격 전반에 대한 합의 및 OECD 이전가격 원칙의 도입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전면도입의 효과

이번 OECD-RFP 보고서에는 브라질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전면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ECD-RFP 보고서는 브라질의 기존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OECD 이전가격 원칙의 부분적 혹은 이원적 도입 체계가 조세의 확실성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납세자의 법률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중과세 혹은 조세 일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와 RFP는 브라질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의 완전한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 원칙 적용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부재 및 차이로 기인하는 이중과세 가능성 제거
- 현재 BEPS 실무에서 발생하는 과세 불평등으로 인한 국가적 조세 일실 방지
- 국제적 관점에서의 조세 확보 및 투자처로서의 브라질 강점 강화
- 브라질을 글로벌가치사슬 내에 합류시킴으로써 브라질 내 무역 및 투자

## 육성

- 향후 브라질의 OECD 가입 도모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OECD-RFP 보고서에서는 브라질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도입과 관련하여 점진적 도입 및 즉각적 도입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ECD-RFP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브라질 내 중소기업이 겪게 될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점진적 도입 방안은 이전가격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사항 준수 의무에 차등을 두어 OECD 국가에 사업을 이미 확대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납세자부터 우선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브라질의 기존 이전가격 체계의 변화 방안

OECD-RFB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브라질 내 기존 이전가격 규정 간 융합이 이행될 시 브라질이 경험하게 될 이전가격 환경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BEPS Action 13에 의거하여 기 도입한 국가별보고서 이외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의무의 추가적 도입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정상가격 원칙에서 벗어난 기존 브라질의 이전가격 법률 내용 수정(예. 고정 마진, 비교가능성 관련 부분 등)
-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및 그 외 가장 합리적인 방법 등을 포괄하는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도입
- 기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의 수정 및 폐기
- 이전가격 분석 시 기존 개별 거래 항목 별 접근 방법을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교체
-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를 이전가격 분석대상 거래로 포함하는 법률 도입
- 정상가격 원칙에 어긋나는 조세공제제도의 검토

### KPMG observation

OECD-RFB 보고서는 OECD와 RFB 간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될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합의점 및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납세자에 간편성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등을 포함한 이전가격 규정이 개발되어 입법 제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India: Transfer pricing proposals in Union Budget 2020 \(February 3, 2020\)](#)

#### **인도: 2020년 연방예산안(Union Budget)에 이전가격 대응방안 발표**

2020년 2월 1일에 발표된 2020년 연방예산안은 아래의 이전가격 관련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 기업의 인도 소재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 적정 이익은 사전 승인 신청서(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규정과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에 따라 산출
- 이전가격규정 적용을 받는 비거주 은행의 인도 PE(지점)에 송금된 이자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적용범위에서 제외
- 감사보고서와 이전가격 문서화를 법인세 신고와 같이 제출하거나 법인세 신고일까지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제출일을 법인세 신고일 1개월 전으로 개정하며, 동 규정은 FY19-20부터 실행

[Back to top](#)

---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